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(장기1차)]

□ 점검일시 : 2020.02.17 (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김동수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가설전기 접지를 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안전사고가 우려됨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33(감전 재해예방 안전 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가설전기 접지를 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안전사고가 우려됨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33(감전 재해예방 안전 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화재 시 즉시대응이 곤란하므로 소화기를 비치할 것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7(화재/폭발/질식 예방 및 안전작업 기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건축물에 고드름이 종류석 형태로 결빙되어 있으므로 제거 시 낙하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보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 요망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21(낙하·비래 안전시설 및 작업 기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실내 및 실외 자재적치장 주변에 소화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 예방 필요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실내 및 실외 자재적치장 주변에 소화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 예방 필요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그라인더는 회전날 비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불꽃비산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람.

- 작업구간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7(화재/폭발/질식 예방 및 안전작업 기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그라인더는 회전날 비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불꽃비산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람.
- 작업구간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7(화재/폭발/질식 예방 및 안전작업 기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외부 비계 작업발판 고정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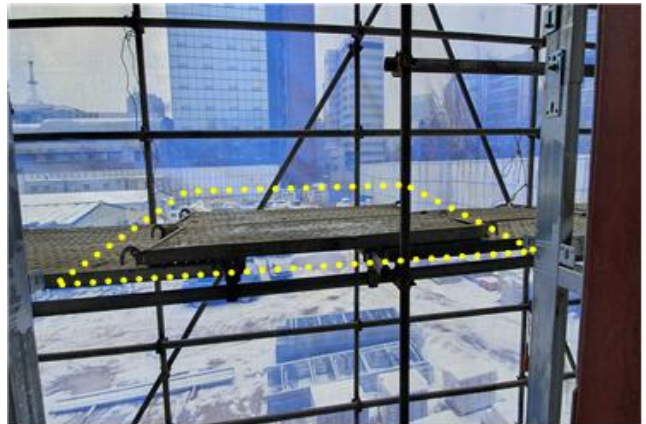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19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외부 비계 작업발판 고정 미흡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19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1층 작업장 이동구간 경사로 및 계단 등 통로 설치 미흡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19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지게차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로 충돌·협착 등의 안전사고 우려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3(건설기계 사용시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)

